

의안번호	제1023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

발의자	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5월 30일

#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

(이태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23
----------	------

발의연월일 : 2025년 5월 30일  
발의자 : 이태훈, 노금식, 김호경,  
박용규, 변종오, 임영은,  
황영호

## 1. 제안이유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식품안전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주체들의 책무 및 협력체계, 위원회 설치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식품안전 시책 추진 시 본 조례 우선 적용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 사업자의 책무와 역할 및 도민의 권리와 역할을 규정함  
(안 제4조~제6조)
-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위원회의 구성, 운영, 회의, 수당 및 비밀준수 의무 등 구체적 운영 사항에 관해 규정함(안 제9조~제12조)
- 식품안전 관련 정보 제공과 도민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3. 조례안 전문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나. 비용 추 계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 의 : 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품국 식의약안전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식품안전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안전”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식품 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 “사업자”, “소비자”에 대한 정의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복적인 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식품 관련 사업자는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생산·판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식품 등의 특성에 따른 안전 확보에 노력할 것
2. 식품 등으로 인해 도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할 것

제6조(도민의 권리와 역할) ① 도민은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식품 선택에 있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위생환경 개선과 유해식품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식품안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민, 관련 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4. 식품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 사항
5. 도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식품안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소비자, 학부모 및 식품안전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보 제공 및 도민 제안)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식품안전 시책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생활의 변화와 전망
2. 식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식품안전법령등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식품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것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식품안전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통해 도민의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식품안전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회의 참여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 3. 관련조문

- 제9조(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회의), 제12조(수당 등)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5년)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 위원회 수당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지침을 준수함
-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 하되 이중 당연직(충청북도 소속공무원) 1명 위촉직 9명(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 위원 지역비율을 준용하여 청주권 위원 4명, 비청주권 위원 5명\*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 \* 비청주권 위원 5명 (50km초과 100km이내 2명, 100km초과 200km이내 3명)
- 연간 회의 개최는 정기회 1회, 대면 출석 회의 1시간으로 가정한다
- 수당 지급액 기준(1회)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 별표에 따른다.

나. 추계 결과 : 5,550천원(도 100%)

-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5년 1,110천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5,550천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예 산	1,110	1,110	1,110	1,110	1,110	5,550

-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수당 1,110천원 x 5회 = 5,550천원

· 출석수당 5,550천원

① 기본수당 100,000원 x 9명 x 5회 = 4,500천원

② 원거리 출석수당 50km초과 100km이내 30,000원 x 2명 x 5회 = 300천원

100km초과 200km이내 50,000원 x 3명 x 5회 = 75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 100%(정책기획관 도정참여제도운영 사업비)